



I. 서 언

2010년 우리 경제는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0.2%라는 저성장에 대비된 통계적 환상(Numerical fantasy)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다.

지난 2년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은 내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재정운용상의 이중고를 겪었다. 그나마 2010년에는 내국세 예산이 전년대비 5%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은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라 내국세 예산도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

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현상, 국제유가 인상, 물가인상 요인 등 세출 측면에서는 다양한 재정 압박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의 세입측면은 지난 2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2010년 제도운영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2011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0년 지방재정의 최대 화두는 “재정건전성”이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사건에서 촉발된 재정건전성 및 효율화의 요구가 (중전부터 문제시되어 오던) 호화청사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고, 행사·축제예산 등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진단,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부세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적 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방교부세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맞춰 2010년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노력 항목(인센티브 제도)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재편하였다.

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을 효율화 할수록 보통교부세가 증대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을 정비하여 유사·중복적인 사업이나 사실상 폐지되어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여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방교부세 제도의 특성상 2010년의 제도개선 사항은 2011년도 교부세 산정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¹⁾)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2010년과 달리 2011년의 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분석,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금년은 그 보다는 지난 경제위기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부세 제도 운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1) 자세한 사항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 등록되어 있는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등을 참조

II.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의 종류

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과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재원인 도로사업 보전분(2011년까지 한시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방법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배정하게 되며, 도로사업 보전분의 경우는 시행중인 공사의 잔여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게 된다.

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객관성 ·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확실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교부대상 수요항목이 시책사업 · 지역현안 · 재해대책 · 지역개발 · 특정현안의 5개 항목에서 지역현안 · 재해대책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재원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부터 시책수요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하였으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시²⁾ 관계부처간의 합의된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하여 운영기한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되었다.

2010년에는 우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총149개 대상사업을 90개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라.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2004년말에 지방세로만 운영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징수세액 전액을 부동산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전액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까지 부동산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시도 및 시군구 귀속분) 및 거래세 감소분(시도 귀속분) 보전에 먼저 사용되고, 남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세수 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시·군·구의 재정보전과 재원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지방교부세의 규모

2011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총 30조 1,904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10.2%(2조 7,984억원)이

2) 지역발전위원회 발표(2009.9.16)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보전, 분권교부세 발전적 개편 등’ 지방재정지원방안을 위한 제도 개편

늘어난 규모이다. 이 가운데 법정분은 29조 1,22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5%(2조 7,764억원)이 늘어나고 부동산교부세는 1조 681억원으로 2010년 대비 2.1%(220억원)가 늘었다.(<표1>, <표2>, <표3> 참조)

〈표1〉 2011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내국세 대비율	2010예산(A)	2011예산(B)	증 감 (B-A)	증감율
법정분 합계	19.24%	26,345,851	29,122,280	2,776,429	10.5
보통교부세	17.59%	24,090,337	26,625,487	2,535,150	10.5
재정부족액보전	17.03%	23,240,337	25,775,487	2,535,150	10.9
도로보전분	0.56%	850,000	850,000	-	
특별교부세	0.71%	968,347	1,073,979	105,632	10.9
분권교부세	0.94%	1,287,167	1,422,814	135,647	10.5
내 국 세	2011 추정액	136,932,700	151,363,200	14,430,500	10.5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전액	1,046,100	1,068,100	22,000	2.1

〈표2〉 2011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비 율	규 모	비 고
총 계		10,740	2010년 9,683억원
지역현안수요	30%	3,222	•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시책수요	20%	2,148	• 국가적 장려사업 등 지원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지원
재해대책수요	50%	5,370	•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재원보전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잉여분		• 행정·재정실적 우수자치단체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표3〉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균형 재원
전국	3,930	10,200		18,892		28,853		31,328		10,221
	3,930	8,667	1,533	9,971	8,921	7,697	21,156	19,028	12,300	

Ⅲ. 2011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1.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가.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 (4개측정항목·16개세항목별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수요자체노력)	-	기준재정수입액 (보통세의 80%의 기초수입 + 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	재정부족액 ↑ (조정율 적용)	≒ 보통교부세
--	---	---	---	-------------------------------	----------------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70조 7,040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43조 4,121억원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교부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총57조 8,381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29조 5,019억원으로 재정부족액 총액은 28조 3,362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11년도 조정율(88.2%)³⁾을 곱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이 된다. <표4 참조>

2011년도 보통교부세 25조 7,755억원(자치단체 재정부족 보전분)의 배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는 평균 4,263억원, 경기, 강원 등 9개도는 평균 5,228억원이 지원되었다.

73개 시 중에서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가 재정여건이 좋아 불교부단체가 되었으며 나머지 67개 시는 평균 1,316억원, 86개 군은 평균 1,12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정율(%)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 100

〈표4〉 2011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계	578,381 (707,040)	295,019 (434,121)	283,362	257,755
서울	(100,778)	(102,787)	(-2,009)	-
광역시분	107,171 (107,171)	78,131 (78,131)	29,040	25,579
도 분	131,159 (131,159)	86,663 (86,663)	44,496	39,319
시 분	198,427 (226,308)	98,461 (134,776)	99,966	88,146
군 분	141,624 (141,624)	31,764 (31,764)	109,860	96,981
제주특별자치도	정액교부	-	-	7,730

※ ()내는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나. 보통교부세 산정 보완 · 개선사항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시책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를 강화하였고, 둘째,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쟁을 통한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보완 · 개선하였으며, 셋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이 반영될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고 또한 실질적인 재정수요 · 수입을 능동적 · 선제적으로 보강하였다.

1)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 실행력 제고

① 녹색성장 수요 강화

녹색생활공간 및 녹색 교통망(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구축 실적을 적용한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를 강화하여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예산(투자)비중에 따라 자체노력으로 반영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를 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 생산 지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확보하여 보정수요로 전환하

였다.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정하여 시·도 수요에 반영하였으며 ‘호화청사 논란’ 등 국민적 관심사항 반영과 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강력히 유인하기 위하여 지방청사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을 자체노력에 반영하였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수요 강화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체노력을 반영하였고, 도심지역내 개별입지 공장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관련 재정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지원하였다.

2) 건전재정 및 성과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 항목을 보강·확대하여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및 성과창출 강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먼저, 자체노력 항목을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으로 구분 실효성이 없는 항목 또는 단순히 시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제외 또는 변경하였으며, ‘세입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세입증가 시 기준재정수입증가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출효율화보다 높은 반영률(150%)을 적용하는 등 자체노력 항목의 범주화 및 반영률을 조정하였으며,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자구노력 달성도에 따라 항목별로 등급화(10등급)하여 반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항목이 다수 존재함에도 측정방식이 상이하여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자체노력 항목과 재정분석지표를 연계, 적용통계를 통일하고 동일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재정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교부세에 반영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건비 절감은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의회경비 절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의회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우리부가 지방에 제시하는 기준을 교부세 산정시에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산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노력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원리 도입 및 재정성

과 반영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예산절감 등 재정수요부문과 세입확충 등 재정수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규모는 총 3조 9,610억원으로 종전(2010년도)의 인센티브 반영액 총 2조 8,286억원에 비해 1조 1,324억원이 늘어났다.

3) 실질적인 재정수요 · 수입의 능동적 · 선제적 보장

①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전 보통교부세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 보장(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시행)」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의 통합전 수준을 유지, 통합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전 각 자치단체의 개별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반영하였다.

② 낙후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적용기준 개선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로 반영해 오고 있는 ‘오지지역’ 수요의 적용통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대체 통계 확보가 필요하여 기존 오지지역과 유사한 지역, 즉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2011년 산정시에는 기존 오지지역을 적용한다는 특례(부칙)를 명시, 새로운 지정은 2012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③ 농어촌도로 실질수요 반영을 위한 산식변경

농어촌도로개량수요의 경우, 실제 개량하지 않고 미개량도로로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를 보정 받아오던 것을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 실제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미개량 도로면적 대신 포장 실적(사업추진실적 반영효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④ 농어촌지역수요(경지, 수산, 축산) 및 마을상수도 수요 산식변경

현행 지역균형수요내 회귀식 적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통계수치(경지면적, 어장면적, 가축두수)가 소수여도 기본적인 수요액을 보정 받게되어 종전 회귀식에서 산식변경을 통해 실질적 재정수요를 반영하였다.

⑤ 실제 수요발생보다는 단순한 보상적 성격의 수요 폐지

비과세로 인한 재산세 손실을 가정하여 반영하던 ‘국가 등 비과세 보전지역’ 수요는 실제로는 행정기관 및 도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실수요 없이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임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⑥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특·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시 보정률을 12%에서 15%로 상향 반영되었다.

⑦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산정 항목 변경

지방세목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수입산정 지방세 항목을 변경(15개 → 10개)하였고, 경상세 외수입 중 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2. 특별교부세 운용 방향

가. 운영방침

2011년도 중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 하에 재원별 운용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물가안정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판로개척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지역 향토자원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지방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 재난관리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 등 재난관리 지원은 물론 재해예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방사업의 지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숲 조성, 폐철도 등을 활용한 자연채감형 자전거길 조성 및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지원 등 지역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위법 · 부당한 집행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현안 및 재해예방 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하고, 상반기 중으로 최근 몇 년간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대한 수시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 집행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불이익(역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달 특교세 집행내역에 대해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요별 운용기준

1) 지역현안수요

지역현안수요는 예산편성이나 보통교부세의 수요산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는 수요로서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30% 해당액(2011년 3,222억원)이다.

이러한 지역현안수요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게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할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재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현안 수요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1회성·소비성 행사비, 지방의회·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당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관행(년 4회 정도 지원)을 감안하여 배정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2) 시책수요

시책수요는 2009년에 새로 신설된 수요로서 국가장려사업이나 지역역점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연간 재원규모는 특교세 총액의 20%(2011년 2,148억 원)이다.

금년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시급한 국정현한 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가급적 연도 초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3)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2011년 5,3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해복구비와 재해예방사업비로 구분 지원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대책수요는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행해 나가면서도, 재해발생 이후의 복구비만을 지원한다는 생각보다는 가급적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방사업에 지원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히 재원을 배정하여 자치단체가 재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 · 재정 우수 운용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 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나, 주민복지 · 지역경제 ·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에게 지원하게 된다.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우수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인센티브 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해대책수요 재원의 사용 잔액이 예상되는 시점(10월말 이후)에 평가결과 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배정하되,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규모는 연말 재해대책수요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3. 분권교부세 운용 방향

가. 분권교부세 산정결과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관련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 기초자료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확인 · 검증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 정상적수요 산정

정상적수요는 경로당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6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상적수요 대상사업은 당초 90개였으나, 지난해에 사회복지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구조조정시 23개 사업을 통·폐합하였다.

재원은 전체 분권교부세 총 재원인 1조 4,228억원의 50.7%에 해당하는 7,215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자치단체별로는 자치단체별 예산편성현황 및 관련 통계와의 상관관계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산정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2) 비정상적수요 산정

비정상적수요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운영, 버스운송재정지원 등 정상적수요와 같이 일정한 산식적용이 어려우며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반영이 필요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고려하여 분권교부세 총 재원의 49.2%에 해당하는 7,013억원을 배정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하였다.

비정상수요 대상사업은 당초 일반수요 32개와 특정수요 23개 등 총 5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대상사업 구조조정으로 일반수요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수요와 특정수요 구분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비정상적수요로만 분류하고 있다.

나. 제도개편을 통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완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였고, 지난해에는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대상사업 구조조정은 재원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분권교부세 내에서의 재원이전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인 사회복지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재정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실태에 대하여 진단해보고, 국가사업 또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분권교부세를 인상 등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부처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다.

4. 부동산교부세 운용 방향

가. 전액 시·군·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

2010년부터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도 부동산교부세는 전액 시·군·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하였다. 시·군·자치구별로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규모(5%) 등을 반영하여 배분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지난 2009년까지 시행된 광역자치단체의 취득등록세에 대한 세수감소분 보전과 관련하여 일부 아직까지 정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중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에 교부

2011년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부동산교부세 배분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15일까지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2월말까지, 2011년 12월 15일까지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말까지 차질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V. 결 언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의 수직적인 재원조정 뿐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인 재원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모든 부분에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재원이 전국에 걸쳐 균형적으로 흘러가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분될 때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임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부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방향으로 2011년 지방교부세를 운영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는 내국세 예산이 10%이상 증가하여 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과 내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신규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제외하면 지방세 세입은 2008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⁴⁾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근간인 거래세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전해 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적절히 재원이 배분되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안정성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권교부세 도입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National Minimum) 등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2011년에는 지방교부세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2010년 11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44조 5천억원 수준으로 2009년 40조 8천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비세 도입효과(2조6천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다소 미흡한 수준